

임원추천위원회
설치운영규정

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항 중 “추천하여야 한다.”를 “추천하여야 하며,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이 중도사임하거나 추천기관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이 된 후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참석위원 중 가장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존속한다.”를 “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임명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2항 중 “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으며”를 “제척·회피하여야 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임명권자는 제척·회피하지 않은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의를, 회피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인력 Pool, 언론보도, 신문 광고”를 “경상남도과 창원시 및 공단의 홈페이지,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미달하는 시에는”을 “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”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결원일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한 후에,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심사 등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이해관계자의 참여제한) 공단의 임·직원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.) 및 경상남도과 창원시의 공무원(경상남도과 창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<u>추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이 중도사임하거나 추천기관에서 위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이 된 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<u>추천하여야 하며,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</p>

제4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
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
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
를 주재한다.

<신 설>

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
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
때까지 존속한다.

제7조의2(공정성 확보) ①
(생략)

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
제척·기피·회피할 수 있으며,
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
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회의 위원
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
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
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거
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
에는 참석위원 중 가장 연장
자를 위원장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존속) 위원회는
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
때까지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
로 하되, 임명권자가 요구하
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.

제7조의2(공정성 확보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
제척·회피하여야 하며, 추천
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
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1.~3. (생략)

<신설>

제9조(임원후보자의 모집)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인력 Pool, 언론보도,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,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,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공개모집 공고, 지원서 접수,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임용예정 직위, 선발인원, 응모자격, 직무수행요건, 임용계약 및 보수, 지원서 접수, 시험방법,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1.~3. (현행과 같음)

③ 임명권자는 제척·회피되지 않은 의결에 대해서는 재심의
를, 회피하지 않은 위원에 대
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
다.

제9조(임원후보자의 모집)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경상남도
와 창원시 및 공단의 홈페이지,
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
사이트 및 경상남도 또는 창
원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1
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,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,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, 공개모집 공고, 지원서 접수,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임용예정 직위, 선발인원, 응모자격, 직무수행요건, 임용계약 및 보수, 지원서 접수, 시험방법,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~④ (생략)

<신 설>

②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창원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, 임명권자가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~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
⑥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결원일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한 후에, 이사가 상임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심사 등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의2(이해관계자의 참여제한)

공단의 임·직원(임원추천위원회
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
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않은
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) 및
경상남도과 창원시의 공무원
(경상남도과 창원시의회 의원
을 포함한다)은 공개모집에
응모할 수 없다.